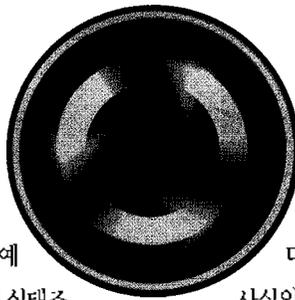


# 가해자의 83%는 성폭력 피해자였다

:: 권김현영 한국성폭력상담소(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 공동연구원)

“근무를 교대로 하다보면 일주일에 2번씩 그 고참과 함께 있게 된다. 처음 들어갔을 때 심하게 기합을 줘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든 다음 한달 전부터 자기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몸을 애무하고 최근에는 항문삽입까지 했다.” (피해 사례 인터뷰 중)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현역군인과 제대 3년 이내의 예비역 등 671명을 대상으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조사 결과 밝혀진 성폭력 실태는 충격적이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15.4%가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던 것이다. 그러나 피해·가해율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성폭력에 대한 낮은 문제인식이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군대내 성폭력에 대해 오래 있는 일(64%)라고 생각하며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54.2%는 성추행과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는 고참이 장난으로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면접상담을 통해 남성간 강간피해가 보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과정에서는 성기삽입 등의 행위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성간 성폭력은 이성간의 성폭력과는 달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일까?

하지만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전체 피해 중 83.5%가 2회 이상의 지속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가해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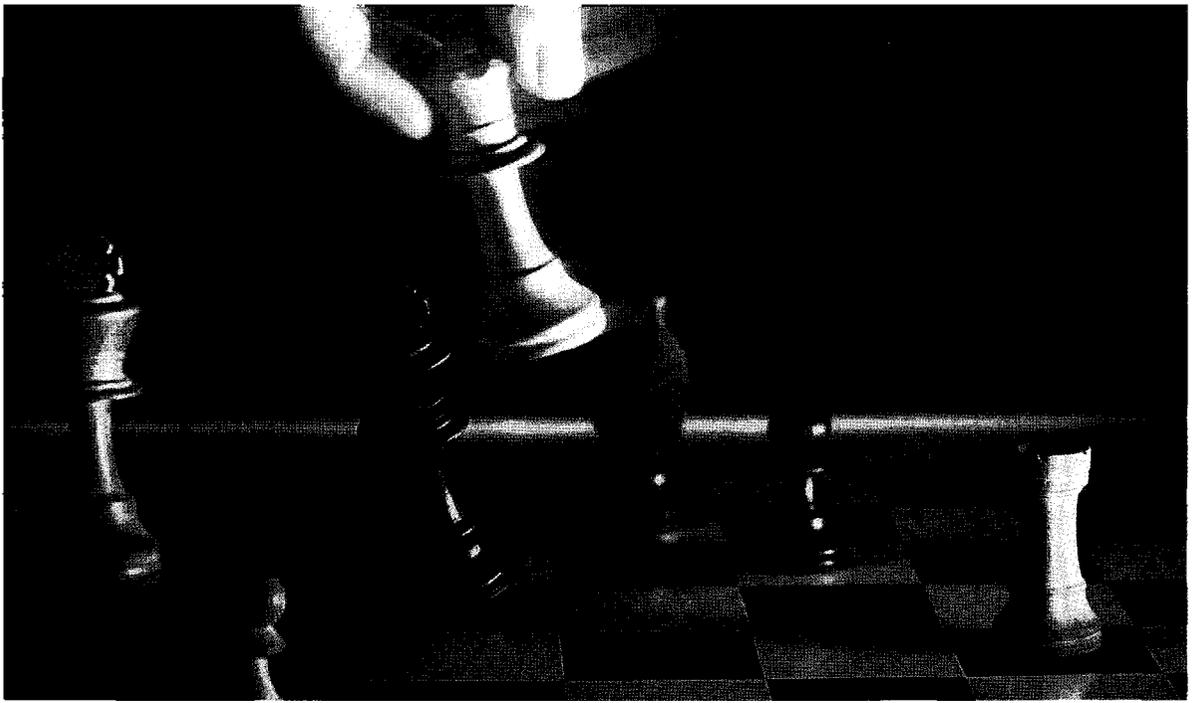
83%가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사소한 문제라기보다는 군생활 내부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어, 피해 사실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서로간의 침묵을 강요하는 뿌리깊이 내면화된 문제로 보인다.

## ‘군기잡기’의 한 형태로 발생

세간에서는 남성간 성폭력의 원인을 남자들끼리 성욕을 풀 곳이 없어서 그런다거나, 일부 동성애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성간 성폭력은 전체의 81.2%가 선임병에 의해 일어나 철저하게 군대내 위계질서에 따라 일어나고 있으며, 섹슈얼한 욕망이 배제된 ‘군기잡기’의 한 형태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가해자는 “때번 때리지는 못하고... 장난이 아니면서도 상대방이 기분나빠하며, 합법적이면서 갈굴 수 있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남성간 성폭력은 남성들간의 힘의 경쟁심리에서 나오는 남성성의 확인수단이자 지배와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폭력행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남성성이 훼손당했다는 모욕감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공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 피해자는 “남자끼리 당하면 그거는 얘기를 꺼내지를 못해요, 왜냐면 남자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창피한데... 대부분 자기가 당했어도 그런 말 자체를 꺼내지 못해요, 오히려 그 얘기를 하면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라고 말한다.

이런 모욕감은 특히 남성간 항문강간 피해자의 경우에는 더욱 크다. 남성간강간피해자의 이처럼 깊은 수치심은 항문성교가 남성성(masculinity)을 훼손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남성에 의한 강간을 당한 남성에게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현대의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셈이다.

### 강제적 성행위와 동의의 성행위를 같이 처벌

사법들의 인식도 문제지만, 현재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해결 과정은 법적, 제도적, 의식적 차원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한계 중의 하나는 성폭력을 ‘청군기 문란, 또는 위반사고’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강제적인 남성간 성행위와 동의에 의한 남성간 성관계를 거의 차별 없이 처벌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동의에 의한 성행위와 강제적인 추행 혹은 강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성폭력의 범죄구성요건의 핵심인 ‘강제성’을 기본 기준으로 삼리

지 못한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형법 및 성폭력 특별법에서 강간피해자를 부녀자로 국한하고 있고, 강간의 개념을 남성 페니스가 여성의 질에 삽입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점도 문제이다.

이에 대해 외국관련입법을 살펴보면 강간의 객체에 대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타인’으로 변경하고, 강간죄의 ‘성교’를 ‘구강·항문 성교와 이물질 삽입 등을 포함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남성간 강간을 계간(鷄姦)<sup>1)</sup>이라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단어로 규정한 현 군형법규정을 폐기하고, 남성간 강간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재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가장 끔찍하고 슬픈 결과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만이 이 끔찍한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1) 계간이라는 단어는 남성 동성애를 일컫는 말로, 닭 개사를 사용하여 행위자(치욕)를 동물적인 행위로 폄하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강제성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 계간만을 가지고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곧 남성동성애자를 차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